

제2022-114호 2022년 11월 17일(목)	시 보  여수시	시 정 지 표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2-492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1
- 여수시 고시 제2022-49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22-498호 2022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4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2-29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5
- 여수시 공고 제2022-2986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 공고(진두마을 도로개설공사) 8
- 여수시 공고 제2022-2992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2
- 여수시 공고 제2022-2993호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행정처분(허가취소 등)에 따른 청문 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8
- 여수시 공고 제2022-2994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26
- 여수시 공고 제2022-3010호 도로지정 변경공고(화양면 안포리 산842번지 외 3필지) 28
- 여수시 공고 제2022-3013호 도로지정공고(돌산읍 평사리 1405-64번지 외 1필지) 30

기 타

- 여수시 규칙 제798호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32
- 여수시 규칙 제799호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8

회 람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17.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봉계동 811-5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 3-137호선)사업
 - 나. 명 칭 : 여수상공회의소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가. 면 적 : 1,105㎡
 - 나. 규 모 : L=80m B=13.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여수시장
 - 나. 주 소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21.11.25.~2022.12.31.**
└변경: 2021.11.25.~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없음)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m ²)	편입면적(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권리내용	성명	주소	
합계				14,295	1,105						
1	봉계동	396-5	답	89	88	전라남도여수시 좌수영로55(광무동)	여수상공회의소				
2	봉계동	393	답	89	89	봉계동 737	삼일중고자동차판매주식회사	근저당권	(주)고려상호신용금고	여수시 충무동 502-1	
								근저당권	(주)주택사업공제조합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15-23	
								근저당권	신한국산업개발주식회사	여수시 중앙동 711	
3	봉계동	871-15	대	378	3	기획재정부	국				
4	봉계동	871-16	도	5,905	66	건설부	국				
5	봉계동	811-5	도	6,001	67	건설부	국				
6	봉계동	741-5	대	47	5	전라남도 여수시 가곡길26-1(선원동)	김치곤				
7	봉계동	741-7	도	225	187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55(광무동)	여수상공회의소				
8	봉계동	742-2	도	228	205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55(광무동)	여수상공회의소				
9	봉계동	744-2	도	600	391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55(광무동)	여수상공회의소				
10	봉계동	726-113	임	12	2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47,302동 604호(웅천동,신영웅천지웰3차아파트)	김상희	지상권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여항단지로 210(봉산동)	
								근저당권	옥과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42	
11	봉계동	726-76	전	717	1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47,302동 604호(웅천동,신영웅천지웰3차아파트)	김상희	지상권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여항단지로 210(봉산동)	
								근저당권	옥과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142	
12	봉계동	726-116	임	4	1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중앙로47,302동 604호(웅천동,신영웅천지웰3차아파트)	김상희	지상권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전라남도 여수시 여항단지로 74(봉산동)	
								근저당권	옥과농업협동조합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대학로 6	

여수시 고시 제2022 - 49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 고시 합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점용·사용 장소	점용·사용 면적(㎡)	점용·사용 목적	점용·사용 기간	피 승인 자		비 고
					주 소	성 명	
2022-65 (22. 11. 16.)	여수시 남면 화태리 44-10번지 일원	194.83	남면 월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2022. 11. 16. ~ 2037. 11. 1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 1 (학동)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22. 11. 16.

여 수 시 장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여수시의회 의결로 확정된 2022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예산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2022년도 제6회 추경예산	2022년도 제5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계	1,930,565	1,934,345	△3,780	△0.20%
일반회계	1,726,845	1,736,798	△9,953	△0.57%
특별회계	203,720	197,547	6,173	3.12%

○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별	2022년도 제6회 추경예산	2022년도 제5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기금	129,032	91,114	37,918	41.6 %

2022. 11. .

여 수 시 장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인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과 관련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7.

여 수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2020. 6. 18. ~ 2023. 12. 31. (변경 2024.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돌산읍 진두마을 도로개설)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9-43번지 일원	면 적 : 기정 - 4,996㎡ 변경 - 5,670㎡ 규 모 : L=478m B=6.0m	여수시장/ 여수시 시청로 1

2. 공람장소, 공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돌산읍 진두마을 도로개설	여수시 도로과	2022. 11. 17. ~2022. 12. 1.(14일간)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2. 11. 17. ~ 2022. 12. 1. (14일간)**
- 제출방법: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4. 토지 및 지장물조서: 붙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061-659-4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변경)

연번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내용	성명	주소	
1	돌산읍 우두리	799-6	도	1,002	11	국유지	건설교통부				
2	"	799-42	도	403	64	국유지	건설교통부				
3	"	799-43	대	135	85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7	김인숙				기정
3	"	799-228	대	86	86	공유지	여수시				변경
4	"	799-41	대	248	1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26-4	조창순				기정
4	"	799-41	대	248	0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26-4	조창순				변경
5	"	799-49	전	5,350	998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7	김인숙				기정
5	"	799-229	전	1,051	1,051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7	여수시				변경
6	"	799-53	전	1,801	489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20-1	하영찬				기정
6	"	799-231	전	517	517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9-46	여수시				변경
7	"	799-58	대	602	75	국유지	여수시				
8	"	799-180	전	1,182	395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9-33	이부언				기정
8	"	799-180	전	1,182	455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9-33	이부언				변경
9	"	799-186	전	750	2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22, 612동 402호	조혜자				기정
9	"	799-186	전	750	2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22, 612동 402호	조혜자				변경
10	"	799-200	전	9	3	국유지	여수시				기정
10	"	799-200	전	9	4	국유지	여수시				변경
11	"	799-142	도	47	12	국유지	여수시				기정
11	"	799-142	도	47	13	국유지	여수시				변경
12	"	799-78	도	472	18	국유지	여수시				기정
12	"	799-78	도	472	19	국유지	여수시				변경
13	"	799-141	도	21	15	국유지	여수시				
14	"	799-175	대	193	118	국유지	여수시				기정
14	"	799-175	대	193	127	국유지	여수시				변경
15	"	799-75	전	9,248	1,053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86 빌라아파트 603호	손영주				기정
15	"	799-75	전	9,248	1,518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86 빌라아파트 603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훙실아파트 3동 505호	손영주 김찬지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주소	성명	관리내용	성명	주소	
16	"	799-136	전	617	90	국유지	여수시				기정
16	"	799-136	전	617	92	국유지	여수시				변경
17	"	799-198	전	728	315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16	유재석				기정
17	"	799-198	전	728	330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16	유재석				변경
18	"	799-104	전	496	9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2로 64,1106동 701호	김광화				
19	"	799-135	전	1,667	365	원주시 단구동 519-3	김지희				
20	"	799-81	전	5,315	298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4길 11, 101동 202호	주유진				
21	"	794-88	임	40,683	280	국유지	여수시				
22	"	799-9	전	585	75	국유지	여수시				
계			기정	22	필지	4,996					
계			변경	21	필지	5,670					

○ 지장물조사(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번지				성명	주소	관리내용	성명	주소	
1	돌산읍 우두리	799-59	부속사 창고	블록 스투트	17.0	김인숙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7				
2	"	799-53	하우스	파이프 비닐	75.0	하영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20-1				
3	"	799-53	하우스	파이프 비닐	135	하영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20-1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사전열람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고 중에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7.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9-43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 3-705)사업
 - 나. 명 칭: 돌산읍 진두마을 도로개설 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기정** 4,996㎡ → 변경) 5,670㎡ 증) 674㎡
 - 나. 규 모: L=478m B=6.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기정: 2020. 6.18.~2023.12.31.**
 변경: 2020. 6.18.~2024.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붙임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소 로	3	705	6	국지 도로	478	우두리 산799-6	우두리 794-88	일반 도로	-	건고-10호 (90.01.22)	
변 경	소 로	3	705	6	국지 도로	478	우두리 799-6	우두리 794-88	일반 도로	-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705	소로 3-7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선형 변경 • 면적 증가 A=4,996㎡→5,670㎡ 증)6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할측량결과 반영(면적증가) 및 편입토지 제외(1㎡) • 도로사면 편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8. 공람기간: 2022. 11. 17.~ 2022. 12. 1.(14일간)

9. 공람장소: 여수시 도시계획과, 도로과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3) 및 도로과(☎061-659-4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읍	리			지적	편입	성명	주소	
계			22	필지	71,554	4,996			기정
계			21	필지	65,674	5,670			변경
1	돌산	우두	799-6	도	1,002	11	건설교통부		기정
2	돌산	우두	799-42	도	403	64	건설교통부		기정
3	돌산	우두	799-43	대	135	85	김*숙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	기정
3	돌산	우두	799-228	대	86	86	여수시		변경
4	돌산	우두	799-41	대	248	1	조*순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26-*	기정
4	돌산	우두	799-41	대	248	0	조*순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26-*	변경
5	돌산	우두	799-49	전	5,350	998	김*숙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	기정
5	돌산	우두	799-229	전	1,051	1,051	여수시		변경
6	돌산	우두	799-53	전	1,801	489	하*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20-*	기정
6	돌산	우두	799-231	전	517	517	여수시		변경
7	돌산	우두	799-58	대	602	75	여수시		기정
8	돌산	우두	799-180	전	1,182	395	이*연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9-**	기정
8	돌산	우두	799-180	전	1,182	455	이*연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9-**	변경
9	돌산	우두	799-186	전	750	227	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2*, 6**동 40*호	기정
9	돌산	우두	799-186	전	750	266	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12*, 6**동 40*호	변경
10	돌산	우두	799-200	전	9	3	여수시		기정
10	돌산	우두	799-200	전	9	4	여수시		변경
11	돌산	우두	799-142	도	47	12	여수시		기정
11	돌산	우두	799-142	도	47	13	여수시		변경
12	돌산	우두	799-78	도	472	18	여수시		기정
12	돌산	우두	799-78	도	472	19	여수시		변경
13	돌산	우두	799-141	도	21	15	여수시		기정
14	돌산	우두	799-175	대	193	118	여수시		기정
14	돌산	우두	799-175	대	193	127	여수시		변경
15	돌산	우두	799-75	전	9,248	1,053	손*주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 빌라아파트 60*호	기정
15	돌산	우두	799-75	전	9,248	1,518	손*주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 빌라아파트 60*호	변경
16	돌산	우두	799-136	전	617	90	여수시		기정
16	돌산	우두	799-136	전	617	92	여수시		변경
17	돌산	우두	799-198	전	728	315	유*석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1*	기정
17	돌산	우두	799-198	전	728	330	유*석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1*	변경
18	돌산	우두	799-104	전	496	9	김*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중앙2로 6*,110*동 70*호	기정
19	돌산	우두	799-135	전	1,667	365	김*희	원주시 단구동 519-*	기정
20	돌산	우두	799-81	전	5,315	298	주*진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4길 **, 10*동 20*호	기정
21	돌산	우두	794-88	임	40,683	280	여수시		기정
22	돌산	우두	799-9	전	585	75	여수시		기정

○ 지장물조사(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위치	번지				성명	주소	권리 내용	성명	주소	
1	돌산읍 우두리	799-59	부속사 창고	블록 스투트	17.0	김*숙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				
2	"	799-53	하우스	파이프 비닐	75.0	하*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20-*				
3	"	799-53	하우스	파이프 비닐	135	하*찬	전남 여수시 돌산읍 진두해안길 20-*				

공 고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15.

여 수 시 장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민선8기 공약사항 등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및 기관별 정원 조정 (제2조)

- 가. 공무원의 총수 : 1,929명 → 1,936명(+7)
- 나. 집행기관의 정원 : 1,892명 ⇒ 1,891명(△1)
- 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7명 ⇒ 45명(+8)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제4조 별표3)

- 가. 총계 : 1,929명 → 1,936명(+7)
- 나. 일반직 정원 : 1,881명 → 1,886명(+5)
 - 3급 정원 : 1명(변동 없음)
 - 4급 정원 : 11명(변동 없음)
 - 5급 정원 : 84명 ⇒ 85명(+1)
 - 6급 정원 : 1,783명 ⇒ 1,788명(+5)
 - 전문경력관 : 2명 ⇒ 1명(△1)

다. 기타직 정원 : 48명 → 50명(+2)

• 정무직 정원 : 1명(변동 없음)

• 별정직 정원 : 1명 ⇒ 2명(+1)

• 연구직 정원 : 13명(변동 없음)

• 지도직 정원 : 33명 ⇒ 34명(+1)

3. 입법예고기간 : 2022. 11. 15. ~ 11. 17.(2일간)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장(총무과장)에게 제출하거나 메일(effectyun@korea.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학동, 1청사)

- 받는 사람 : 여수시장(총무과장)

- 전 화 : 061)659-3241, 팩스 : 061)659-5807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929명이며”를 “1,936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892명”을 “1,89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7명”을 “4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총 계	1,936	-					
정무직계	1	-					
시장	1	1					
일반직 계	1,886	-					
3급	1	1					
4급	11	6	1	2	2		
5급	85	42	3	6	6	1	27
6급 이하 계	1,788	-					
전문경력관 계	1	-					
별정직 계	2	-					
6급 상당 이하	2	-					
연구직 계	13	-					
연구관							
연구사	13	-					
지도직 계	34	-					
지도관	2			2			
지도사	32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연구·지도직에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멸실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등)하고자 청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15.

여 수 시 (장)

- 공 고 명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행정처분(허가취소 등)에 따른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2. 11. 15. ~ 11. 29.(15일간)
- 처분원인 : 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
- 처분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 대 상 자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5개소

연번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허가(신고)	반송사유
1	석창주유소	대표	좌수영로 984(봉계동)	'22.12.12. 9:20	폐수	수취인불명
2	(주)대창기계공업	대표	여수산단1로 342-30(화치동)	'22.12.12. 9:40	대기,폐수	수취인불명
3	(주)이레	대표	삼동로 27-6(주삼동)	'22.12.12. 10:00	폐수	이사감
4	세미네츄럴	대표	망양로 482-7(오천동)	'22.12.12. 10:20	폐수	이사감
5	울촌목욕탕	대표	울촌면 동산개길 8-1	'22.12.12. 10:40	대기	수취인불명

7. 청문일시 및 장소

- 청문일시 : 2022. 12. 12.
- 청문장소 : 여수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 주 재 자 :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장

※ 청문주재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당일 새로 지정된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 가.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가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나.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산단환경감시팀(061-659-28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 건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 건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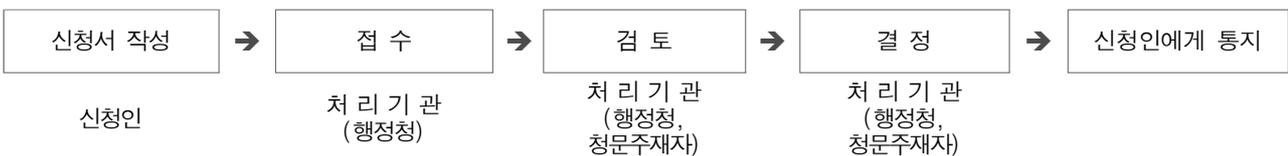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여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멸실 또는 철거하거나 폐업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허가취소 등)하고자 청문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11. 15.

여 수 시 (장)

- 공 고 명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행정처분(허가취소 등)에 따른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2. 11. 15. ~ 11. 29.(15일간)
- 처분원인 : 배출시설 멸실 또는 폐업
- 처분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사항 직권취소
-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 대 상 자 :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5개소

연번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청문일시	허가(신고)	반송사유
1	석창주유소	대표	좌수영로 984(봉계동)	'22.12.12. 9:20	폐수	수취인불명
2	(주)대창기계공업	대표	여수산단1로 342-30(화치동)	'22.12.12. 9:40	대기,폐수	수취인불명
3	(주)이레	대표	삼동로 27-6(주삼동)	'22.12.12. 10:00	폐수	이사감
4	세미네츄럴	대표	망양로 482-7(오천동)	'22.12.12. 10:20	폐수	이사감
5	울촌목욕탕	대표	울촌면 동산개길 8-1	'22.12.12. 10:40	대기	수취인불명

7.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청문일시 : 2022. 12. 12.

나. 청문장소 : 여수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

다. 주 재 자 : 여수시청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장

※ 청문주재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당일 새로 지정된 청문주재자에 대한 기피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가.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

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가 취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 나.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 본 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청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산단 환경감시팀(061-659-28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① 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인 선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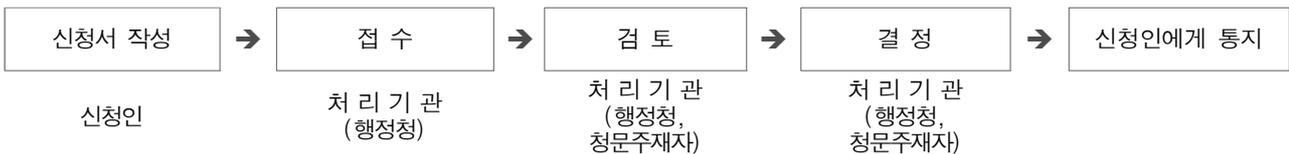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없 음
------	-----	------------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 리 절 차



※ 청문주재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청문주재자가 그 사실을 행정청에 직접 통지합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7.

여 수 시 장

1. 신청개요

신청인	점용·사용 장소	목적	면적	사용기간
와이케이 디벨롭먼트(주) [김승건]	여수시 경호동 1018 지선 공유수면(붙임 1 참고)	해양천수공간 내 해수풀 조성	점용 102,905㎡ 굴착 85,123㎡	허가일로부터 5년~30년*

* 친수호안, 잠제, 수문: 허가일로부터 30년

양빈, 준설, 하상굴착, 매트포설, 공사용 가설도로, 수질오염방지막: 허가일로부터 5년

2. 공람장소, 공람기간

- 공람장소: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
- 공람기간: 2022. 11. 17. ~ 12. 7.(20일간)

3. 의견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2022. 11. 17. ~ 12. 7.(20일간)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 서식에 맞추어 제출
- 제출처: 해양항만레저과(여수시 신월로 648, 4층) 또는 전자우편(ds920724@korea.kr)
- 담당자: 연안관리팀 김동승

4. 기타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659-397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위치도 등



도로 지정(변경) 공고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산842번지 외 3필지 상의 건축허가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변경) · 공고합니다.

2022. 11. 15.

여 수 시 장

1. 위 치: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산842번지 외 3필지
2. 도로면적: 1,132m²
3. 도로길이: 188.60m
4. 도 로 폭: 현황도 참조
4.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m ²)		관련지번 및 이해관계인 동의 여부
				공부면적	지정면적	
당초	계			4,676	891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변경	계			4,676	1,132	
당초	화양면 안포리	산842	임	3,107	439	
		24-2	전	714	150	
		14-1	전	543	193	
		25-3	답	222	51	
		25	답	90	58	
변경	화양면 안포리	산842	임	3,107	558	
		24-2	전	714	158	
		14-1	전	543	381	
		25-3	답	222	51(유지)	
		25	답	90	58(유지)	

※ 기존 도로지정 변경공고 [여수시 공고 제2022-2144호]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1405-64번지 외 1필지 상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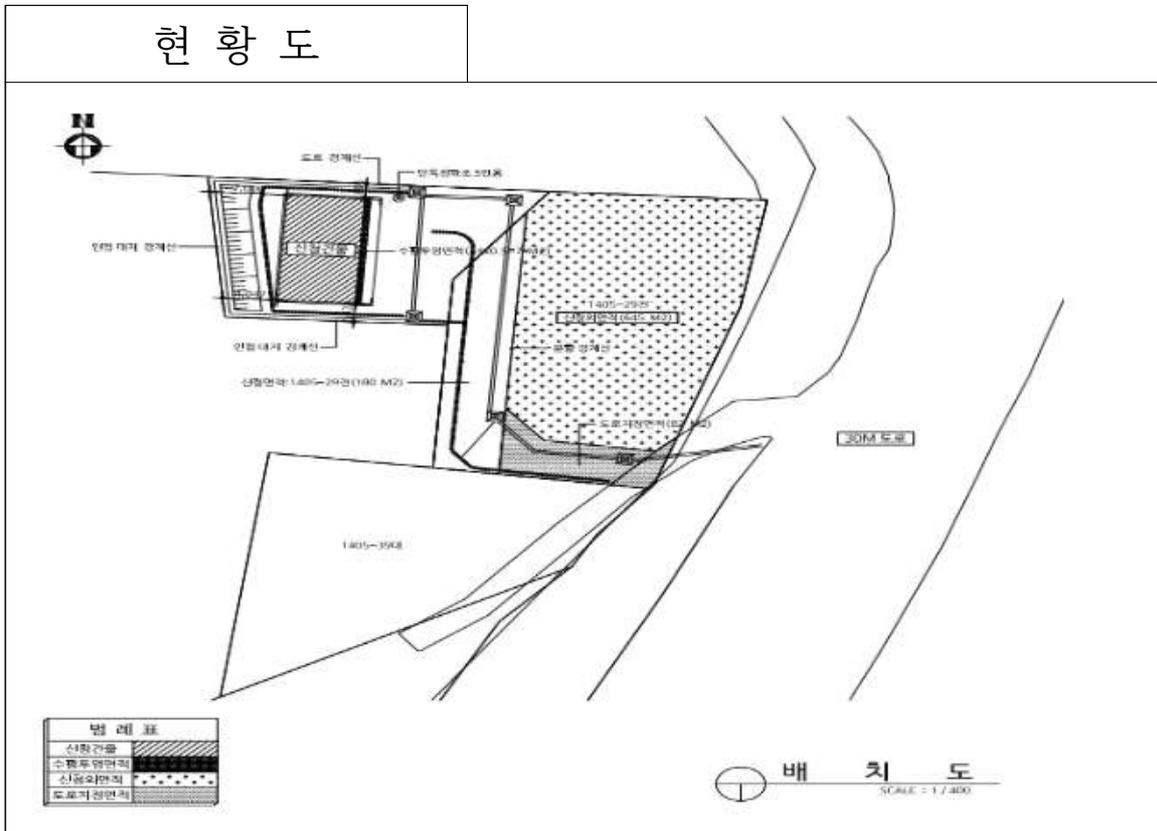
2022. 11. .

여 수 시 장

1. 위 치 : 돌산읍 평사리 1405-29번지
2. 도로면적 : 82㎡
3. 도로길이 : 16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907	82	
	돌산읍 평사리	1405-29	전	907	82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2022년 제10회 여수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
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 월 11 일

여 수 시 장

김기영



여수시 규칙 제798호

붙임 여수시 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1부.

여수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여수시 및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를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하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20조는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 “전가”를 “전가(轉嫁)”로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23조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으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3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 및 제1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관련자” <u>여수시 및 여수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u> ----- ----- -----</p>	<p>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직무관련자” <u>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u> ----- ----- -----</p>
<p><u>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u> <u>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사실을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u></p> <p>1. <u>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2. <u>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3. <u>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p>	<p><u><삭 제></u></p>

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 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가. 주식의 경우 :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나. 지분의 경우 : 지분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다. 자본금의 경우 :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7. 퇴직한 공무원(이하 “퇴직자” 라 한다)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8. 채용동기 또는 학연·지연·같은 종교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9. 최근 2년 이내에 인가·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및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10.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3.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⑦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제7항 후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의견이 합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다시 제4항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시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시장은 그 직위에 취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직위에 취임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기관·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대리,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고객명, 주요 내용, 일자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

<삭 제>

<삭 제>

는 조언·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소속된 기관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소속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해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시장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삭 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 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은 시(市)와 시(市)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市)와 시(市)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삭 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
다

제10조(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삭 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
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
다.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 향응(퇴직자 또는 퇴
직자가 소속된 법인·단체 및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20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 청사, 관사, 건설중기 등 시(市) 소유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1.·2. (생략)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

<삭제>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 1.·2. (현행과 같음)
3. -----

- 전가(轉嫁)-----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

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시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제2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하다.

③ 삭 제

④ ~ ⑫ (생 략)

제24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입찰·경매·공매를 통한 계

④ ~ ⑫ (현행과 같음)

<삭 제>

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 1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친족(「민법」 제 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022년 제10회 여수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여수
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11 월 17 일

여 수 시 장 김경민



여수시 규칙 제799호

붙임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1부.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인증서점 우대)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인증서점 우대) 시장은 여수시 도서 구입 시 인증서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수의계약 등을 우선 체결할 수 있다</p>	<p><u>삭제</u></p>